

담양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담양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18.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아.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2. 11. 18.~11. 23.(5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담양군민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내용이 「담양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2차 피해 방지)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